

2024 조총환·양건 SPA형사소송법 정오표

<2023.10.17. 개정 수사준칙 반영>

[제1권]

p.71

(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하단에 ! 추가

!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가 아닌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8조 제1항).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송을 하는 경우(수사준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8조 제4항).

p.72

©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수사준칙 제7조 제1항).

1.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2. 내란, 외환, 대공,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3.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구성·가입·활동 등과 관련된 사건
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5.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수사준칙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한다(수사준칙 제7조 제2항).

1. 「공직선거법」 제268조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
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4항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
5.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4항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 제4항
7. 「염업조합법」 제59조 제4항

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2조 제5항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3항
10.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6항
11. 「교육공무원법」 제62조 제5항

p.72

㉔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수사준칙 제8조 제1항).

㉕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수사준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수사준칙 제8조 제2항).

1.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제시·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3. 법 제197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수사를 계속할 주체 또는 사건의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4. 법 제245조의8 제2항에 따른 재수사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p.75

㉖ 보완수사 요구 ㉑ 4번째줄 !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요구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59조 제2항)’를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법 제1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59조 제3항).

㉖㉑ 15번째줄

(수사준칙 제59조 제3항) ⇨ (수사준칙 제59조 제4항)

㉖ 보완수사 요구 ㉒ ‘검사는 ~ 원칙으로 한다(수사준칙 제59조 제1항)’를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㉒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송치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사준칙 제59조 제1항).

1.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2.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해당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를 한 경우
3. 법 제197조의3 제5항, 제197조의4 제1항 또는 제198조의2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및 법령의 적용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 검사는 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구체적 사건의 성격에 따른 수사 주체의 적합성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수사준칙 제59조 제2항).

㉞ 3번째줄 아래에 ! 추가

!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수사준칙 제60조제3항).

p.76

㉞ 6번째줄 (동 준칙 제60조 제3항) ⇨ (수사준칙 제60조 제4항)

㉞ 3번째줄 (동 준칙 제60조 제4항) ⇨ (수사준칙 제60조 제5항)

p.77

㉞ 재수사요청 ㉞ 2번째줄 아래에 ! 추가

!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수사준칙 제63조 제4항).

p.78

㉞ 내용 전체(검사는 ~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㉞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64조 제2항).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

! 검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수사준칙 제64조 제3항).

!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를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건송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수사준칙 제64조 제4항).

p.78

㉸ 사법경찰관은 불송치사건에 대하여 ~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제245조의7 제1항)이 ~
 ⇨ ㉸ 사법경찰관은 불송치사건에 대하여 ~ 고소인 등(고발인 제외)의 이의신청(제245조의7 제1항)이 ~

p.89

문제 01 해설 ②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제245조의5 제1호),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사준칙 제59조 제1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2.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해당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를 한 경우 3. 법 제197조의3 제5항, 제197조의4 제1항 또는 제198조의2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및 법령의 적용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
|---|

수사준칙 개정으로 정답 ④ ⇨ ②④

p.92

문제 06번 해설 ①의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수사준칙 제7조 제1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2. 내란, 외환, 대공,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3.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구성·가입·활동 등과 관련된 사건 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5.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
|---|

p.95

문제 11번 해설 ③의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송치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사준칙 제59조 제1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2.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해당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를 한 경우 3. 법 제197조의3 제5항, 제197조의4 제1항 또는 제198조의2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 대상 및 법령의 적용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
|--|

p.113

④ ㉠㉡의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38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

p.196

㉢ 아래에 (17번째줄 아래) ! 추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수사준칙 제32조의2 제2항),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동 준칙 제32조의2 제3항).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동 준칙 제32조의2 제4항).

p.198

㉣ 구속영장청구 또는 석방

9번째줄 ! 내용(사법경찰관은 ~ 편철한다)을 삭제하고, 아래내용으로 대체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를 포함한다)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수사준칙 제36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동 준칙 제36조 제2항 제1호).

p.203

상단

㊤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중지(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 가목) 또는 기소중지(동 준칙 제52조 제1항 제3호)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해양경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동 준칙 제27조 제1항).

p.205

㊤ 두 번째줄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를 삭제

7번째줄 아래에 ! 추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를 포함한다)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수사준칙 제36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즉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동 준칙 제36조 제2항 제2호).

p.303

㊤ 14번째줄 아래에 ! 추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수사준칙 제37조).

p.306

㊤㊤ 11번째줄 아래에 ! 추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처분을 받는 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수사준칙 제38조 제1항).

!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동 준칙 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동 준칙 제38조 제4항).

!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

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동 준칙 제38조 제5항).

p.354

이송 2번째줄,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의’ ⇨ ‘포괄일죄를 구성하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의’로 수정

p.354

수사결과 통지와 이의신청 ② 3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수사준칙 제51조)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중지결정(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한 경우이거나,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이송결정을 한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수사준칙 제16조 제1항(수사개시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한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p.356

㊸ 이송 ㉠ 둘째줄 (수사준칙 제 18조 제1항 제1호) ⇨ (수사준칙 제 18조 제1항)

㊸ 이송 ㉡의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18조 제2항).

- | |
|--|
| 1. 법 제197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때 |
| 2. 그 밖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 |

! 검사는 수사준칙 제2항 제2호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8조 제4항).

p.356

㊸ 이송 ㉢ 셋째줄 (수사준칙 제18조 제3항) ⇨ (수사준칙 제18조 제2항)

p.356

② 수사결과의 통지 ㉠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 검사는 수사종결(수사준칙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이거나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한다) 결정을 한 경우로서 검사가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 제1항(수사개시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한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p.360

문제 02번 해설 ③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64조 제2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 |
|--|

p.361

문제 06번 해설 ②를 아래 내용으로 대체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수사준칙 제51조)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중지결정(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한 경우이거나,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이송결정을 한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수사준칙 제16조 제1항(수사개시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한다 - 피의자에게 통지×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